

의안번호	제 153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2년 11월 22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3
----------	-----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22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민선 8기 본격 추진과 원활한 도정혁신 추진을 위해 새롭고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반영한 기구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기구 조정>

- 신설
  - 투자유치국
- 명칭변경
  - 신성장산업국 → 과학인재국
  - 바이오산업국 → 바이오식품의약국
- 폐지
  -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 <분장사무 조정>

- 이관
  - 광역조정에 관한 사항: 기획관리실 → 행정국
  - 청년대책 및 청년일자리, 청년복지 정책 추진 총괄: 기획관리실 → 과학인재국
  - 도정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기획관리실 → 행정국
  - 위생 및 식품·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국 → 바이오식품의약국
  -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경제통상국 → 투자유치국

- 경제분야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경제통상국 → 투자유치국
- 산업입지 계획·개발·지원·조성에 관한 사항: 경제통상국 → 투자유치국
- 가스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신성장산업국 → 경제통상국
- 연탄·광업·자원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신성장산업국 → 경제통상국
-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성장산업국 → 경제통상국
- 방사광가속기 업무에 관한 사항: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 과학인재국
- 오송역세권 개발: 바이오산업국 → 투자유치국
- 혁신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균형건설국 → 투자유치국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신성장산업국,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바이오산업국, 균형건설국,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 공항관련”을 “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바이오식품의약국, 환경산림국, 균형건설국 소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국, 보건복지국, 경제통상국, 신성장산업국,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바이오산업국, 농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균형건설국 및 환경산림국”을 “경제통상국, 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보건복지국, 바이오식품의약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정국, 환경산림국, 균형건설국 및 행정국”으로 한다.

제6조제3호, 제9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3을 삭제하고, 제7조를 제13조의2로 하며, 제8조를 제9조의2로 하고, 제9조를 제7조로 하며, 제9조의2를 제8조로 하고, 제10조를 제9조의3으로 하며, 제12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3조의2를 제12조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9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가스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16. 연탄·광업·자원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7.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제8조(중전의 제9조의2)의 제목 “(신성장산업국)”을 “(과학인재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성장산업국장”을 “과학인재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청년대책 및 청년일자리, 청년복지 정책 추진 총괄

14. 방사광가속기 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투자유치국) 투자유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2. 경제분야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3. 산업입지 계획·개발·지원·조성에 관한 사항

4. 오송역세권 개발

5. 혁신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의2(중전의 제8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3(중전의 제10조)의 제목 “(바이오산업국)”을 “(바이오식품의약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바이오산업국장”을 “바이오식품의약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위생 및 식품·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2(중전의 제7조)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광역조정에 관한 사항

18. 도정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충청북도조례 제4351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 중 “신성장산업국”을 “과학인재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바이오식품의약국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신성장산업국장, 바이오산업국장”을 “과학인재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바이오산업국장”을 “바이오식품의약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바이오산업국장”을 “바이오식품의약국장”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제통상국”을 “투자유치국”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경제통상국장등”을 “투자유치국장 등”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신성장산업국장”을 “과학인재국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성장산업국장 및 바이오산업국장”을 “과학인재국장 및 바이오식품의약국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성장산업국장, 바이오산업국장”을 “과학인재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경제환경분과의 부서란 중 “신성장산업국,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바이오산업국”을 “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바이오식품의약국”으로 한다.

⑩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4호가목 중 “신성장산업국, 방사가속기추진지원단”을 “과

학인재국, 투자유치국”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5호가목 중 “바이오산업국”을 “바이오식품의약국”으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부지사) ①·② (생략)</p> <p>③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경제통상국, <u>신성장산업국,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바이오산업국, 균형건설국,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 공항관련 업무 및 그 밖에 경제관련 부서 업무에 관한 사항</u></p> <p>2.·3. (생략)</p> <p>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①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재난안전실, <u>행정국, 보건복지국, 경제통상국, 신성장산업국,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바이오산업국, 농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균형건설국 및 환경산림국을 둔다.</u></p> <p>② (생략)</p> <p>제6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2. (생략)</p> <p>3. <u>광역조정에 관한 사항</u></p> <p>4. ~ 8. (생략)</p>	<p>제4조(부지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 <u>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바이오식품의약국, 환경산림국, 균형건설국 소관</u> ----- ----- -----</p> <p>2.·3. (현행과 같음)</p> <p>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① ----- ----- ----- <u>경제통상국, 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보건복지국, 바이오식품의약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정국, 환경산림국, 균형건설국 및 행정국</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기획관리실) ----- -----.</p> <p>1.·2.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4. ~ 8. (현행과 같음)</p>

9. 청년대책 및 청년일자리, 청년복지 정책 추진 총괄

10. · 11. (생략)

12. 도정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3. · 14. (생략)

제7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 (생략)

16. 삭제

<신설>

<신설>

<신설>

제8조(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9. 위생 및 식품·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항

<삭제>

10. · 11. (현행과 같음)

<삭제>

13. · 14.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행정국) -----  
-----.

1. ~ 15. (현행과 같음)

17. 광역조정에 관한 사항

18. 도정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투자유치국) 투자유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2. 경제분야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3. 산업입지 계획·개발·지원·조성에 관한 사항

4. 오송역세권 개발

5. 혁신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의2(보건복지국) -----  
-----.

1. ~ 8. (현행과 같음)

<삭제>

제9조(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7. 경제분야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8. 산업입지 계획·개발·지원·조성에 관한 사항

9. ~ 1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9조의2(신성장산업국) 신성장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10. 가스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11. 연탄·광업·자원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2.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제7조(경제통상국) -----  
-----.

1. ~ 5.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9. ~ 14. (현행과 같음)

15. 가스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16. 연탄·광업·자원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7.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제8조(과학인재국) 과학인재국장  
-----  
--.

1. ~ 9.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13. 청년대책 및 청년일자리, 청

<신 설>

제9조의3(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

단)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2. 방사광가속기 기반 신성장  
육성 종합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방사광가속기 활용확산 방안  
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방사광가속기 기반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제10조(바이오산업국) 바이오산업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 략)
8. 오송역세권 개발

<신 설>

제12조 (생 략)

제13조(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 략)
12. 혁신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  
한 사항

년복지 정책 추진 총괄

14. 방사광가속기 업무에 관한  
사항

<삭 제>

제9조의3(바이오식품의약품) 바이

오식품의약품장-----.

1. ~ 7. (현행과 같음)

<삭 제>

9. 위생 및 식품·의약품 안전  
에 관한 사항

제10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3조(균형건설국) -----

-----.

1. ~ 11. (현행과 같음)

<삭 제>

<p>13. ~ 25. (생략)</p> <p><u>제13조의2</u> (생략)</p> <p>충청북도조례 제4351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p> <p>제3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u>신성장산업국</u>의 존속기한은 20 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13. ~ 25. (현행과 같음)</p> <p><u>제12조</u> (현행 제13조의2와 같음)</p> <p>충청북도조례 제4351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p> <p>제3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u>과학인재국</u>----- -----.</p>
---	--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25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시·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① 시·도는 별표 1에 따른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실·국·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 사 유

-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본격 추진과 원활한 도정혁신 추진을 위해 새롭고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반영한 기구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 작성자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이수현